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2. 8.(목) 12:00 (지면) 2022. 12. 9.(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12. 8.(목) 08:30				
담당 부서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사제도과	<table border="1"> <tr> <td>책임자</td> <td>과장 김태경 (044-203-6249)</td> </tr> <tr> <td>담당자</td> <td>사무관 나대일 (044-203-6288)</td> </tr> </table>	책임자	과장 김태경 (044-203-6249)	담당자	사무관 나대일 (044-203-6288)
책임자	과장 김태경 (044-203-6249)				
담당자	사무관 나대일 (044-203-6288)				

대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 내용

-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한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
-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간 협력 촉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사례

- ❖ (A대학) 정규 학위 과정의 '컴퓨터 공학'이나 '경영학'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나 '공급망 관리' 같은 세부 전공 분야를 소단위 학위과정으로 구성하여 학습
- ❖ (B대학) 식품영양학과·운동처방학과의 융합·연계한 '다이어트 관리·상담'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체중 관리와 유지를 위한 식사요법 등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리며,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간제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고, 학습 이력에 대한 대내외 인정을 위해 해당 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또한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이를 통해 대학의 학사 학위과정과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석사 학위과정을 연계하여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한다.
-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지방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및 특성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한하여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하여 자율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2022.11.15.)
- 간호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지난 5년간(2019~2023) 실시한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 비율의 확대(10%→30%)를 향후 5년간 추가 연장(2024~2028)한다.
- ※ 정원 외 학사 편입학의 학년별·연도별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모집단위별 학사 편입생 수는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으나, 간호대학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분의 30까지 허용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3년 1월 18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소단위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학 현장에서 소단위 학위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춘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교육부 공고 제2022 - 47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속한 사회변화, 기술혁신 및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공지식 뿐 아니라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생들에게 소단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관심에 따라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필요 부분만 선별하여 수강하는 등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높이고, 세부 전공 분야 이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단위 학위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국내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연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간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의 한시적 확대를 연장하고자 함

지방대학 특성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을 개선하여 정원 내 일반편입학 여석 배분 시, 총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을 초과하여 배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편입학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서 지방대학을 적용하지 않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안 제19조의2 제1항 신설)

- 1)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은 학칙, 학사운영규정 및 지침 등 자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 2)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대학생의 학습권 선택 보장 및 세부 전공 분야의 이수부담 감소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

나. 소단위 학위과정의 성인학습자 활용 가능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제2항 신설)

- 1) 시간제등록 학생 등 성인학습자는 해당 학교 수업을 등록·이수할 수 있으나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근거는 부재하여,
- 2) 대학이 정규학위과정의 학생 뿐 아니라 성인학습자에게도 양질의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하여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

다.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 발급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제3항 신설)

- 1)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 발급 여부·발급 형태 등은

대학마다 상이한 상황으로,

- 2) 대학의 장은 학생의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 형태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

라. 소단위 학위과정과 관련한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연계 과정 운영 및 과정 명칭 관련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제4항 신설)

-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한 바,
- 2)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연계한 과정 운영 수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마.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 간 연계과정 운영을 대학 내 또는 국내 다른 대학 간 학부와 대학원 간 연계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20조 개정)

바.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100분의 30까지 학사 편입학 할 수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학년도까지 5년간 연장(별표1 제2호)

사.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편입학을 허가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4 제2호과목1))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88, 6254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dany11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 044-203-6288, 6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소단위 학위과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9조제1항에 의한 전공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경우, 대학의 학생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세부 전공 분야를 최소의 이수 부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단위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 등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성인학습자가 제1항에 따른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 형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해당 학교·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0조 중 “학사학위과정과”를 “해당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 간 학사학위과정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단서 중 “2023학년도”를 “2028학년도”로 한다.

별표 4 제2호과목1) 위반행위란 1)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입학·편입학(편입학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과목2) 위반행위란 2) 중 “입학”을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9조의2(소단위 학위과정) ①대</u> <u>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u> <u>기술대학·원격대학, 각종학교, 대</u> <u>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u> <u>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9조</u>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 교육</u> <u>과정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u> <u>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u> <u>하고 세부 전공 분야를 최소의</u> <u>이수 부담으로 경험할 수 있도</u> <u>록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소단위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u> <u>있다.</u></p> <p><u>② 대학은 법 제36조제1항에</u> <u>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u> <u>을 받는 사람 등 성인학습자를</u> <u>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과정을</u> <u>운영할 수 있다.</u></p> <p><u>③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성</u> <u>인학습자가 제1항에 따른 과정</u> <u>을 이수한 경우, 이를 증명할</u> <u>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u> <u>고, 발급 형태에 관한 사항은</u> <u>학칙으로 정한다.</u></p> <p><u>④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과정</u></p>

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해당 학교·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 간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 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 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해당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2. 제29조제2항 제3호	(생략)	(생략)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간호학과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2019학년도 편입학전형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까지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2. 제29조제2항 제3호	(생략)	(생 략) ----- ----- ----- ----- -----(- -----2028학년 도-----)- -----.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
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p>과. 입학·편입학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허가한 경우</p> <p>2)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을 초과하여 입학을 허가한 경우</p>	(생략)	(생략)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
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p>과. 입학·편입학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입학·<u>편입학(편입학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u>을 허가한 경우</p> <p>2)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을 초과하여 입학(<u>편입학을 포함한다.</u>)을 허가한 경우</p>	(생략)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연 락 처	044-203-6288, 6254